

# 동대구역 엘크루 예비뉴원 입주자모집공고(안)

- 동대구역 엘크루 예비뉴원 건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ds-elcruapt.com>) 및 사전예약 관리를 병행 운영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건본주택 관리는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검수 및 공급계약 체결 시 아래의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나, 방문 가능 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동반자 1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동행불가하고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2.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33-3225)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01(목)**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내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청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청된 주택의 해당청 제한 기간은 당청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01.(목))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9.20.)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2020.10.01.이전)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청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청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주택 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 과열 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s-elcru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정부 정책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거부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으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반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4월 13일(화)	4월 14일(수)	4월 15일(목)	4월 16일(금)	4월 22일(목)	4월 23일(금) ~ 4월 30일(금)	5월 3일(월) ~ 5월 6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7:00)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및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1-1번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1) 동대구역 엘크루 예비뉴원 모델하우스</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은행 시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방문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 2. 19. 시행된 법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14209호(2021.04.0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59-5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6층~지상17층, 아파트 2개동 총 1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일반공급 96세대 특별공급 분 9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3,592.40㎡(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 연면적 : 36,491.0854㎡(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입주예정일 : 2024년 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152	01	71.8384	71	71.8384	20.3445	92.1829	49.3934	141.5763	13.9176	32	3	1	8	-	3	15	17	1
		02	79.0189	79	79.0189	22.6727	101.6916	54.3304	156.0220	15.3087	16	2	1	4	-	2	9	7	1
		03	81.8632	81	81.8632	23.0551	104.9183	56.2860	161.2043	15.8597	32	3	1	8	-	2	14	18	1
		04	84.9744A	84A	84.9744	23.5270	108.5014	58.4251	166.9265	16.4625	32	3	3	6	1	2	15	17	1
		05	84.9744B	84B	84.9744	23.5270	108.5014	58.4251	166.9265	16.4625	16	2	2	3	1	1	9	7	1
		06	84.8460C	84C	84.8460	23.8134	108.6594	58.3368	166.9962	16.4376	15	2	2	3	-	1	8	7	1
		07	84.9294D	84D	84.9294	23.6826	108.6120	58.3942	167.0062	16.4538	16	2	2	3	1	1	9	7	1
		08	84.8943E	84E	84.8943	23.7505	108.6448	58.3700	167.0148	16.4470	16	2	2	3	1	1	9	7	1
		09	131.9186	131	131.9186	37.0431	168.9617	90.7023	259.6640	25.5572	16	-	5	-	2	-	7	9	1
합 계											191	19	19	38	6	13	95	96	

※ 저층 우선 배정세대(9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91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 금액을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당시 기준으로 함.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시공상의 사유나 편의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별, 호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	공급 세대 수	층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21.08.20.		22.01.20.	22.06.20.	22.11.20.	23.04.20.	23.9.20.	입주시
71.8384	2	2층	162,674,842	262,955,158	425,630,000	42,563,000	42,563,000	42,563,000	42,563,000	42,563,000	42,563,000	42,563,000	127,689,000
	2	3층	164,520,857	265,939,143	430,460,000	43,046,000	43,046,000	43,046,000	43,046,000	43,046,000	43,046,000	43,046,000	129,138,000
	2	4층	166,202,528	268,657,472	434,860,000	43,486,000	43,486,000	43,486,000	43,486,000	43,486,000	43,486,000	43,486,000	130,458,000
	2	5층	167,811,580	271,258,420	439,070,000	43,907,000	43,907,000	43,907,000	43,907,000	43,907,000	43,907,000	43,907,000	131,721,000
	24	6층 이상	169,221,890	273,538,110	442,760,000	44,276,000	44,276,000	44,276,000	44,276,000	44,276,000	44,276,000	44,276,000	132,828,000
79.0189	1	2층	174,389,204	281,890,796	456,280,000	45,628,000	45,628,000	45,628,000	45,628,000	45,628,000	45,628,000	45,628,000	136,884,000
	1	3층	176,368,989	285,091,011	461,460,000	46,146,000	46,146,000	46,146,000	46,146,000	46,146,000	46,146,000	46,146,000	138,438,000
	1	4층	178,169,140	288,000,860	466,170,000	46,617,000	46,617,000	46,617,000	46,617,000	46,617,000	46,617,000	46,617,000	139,851,000
	1	5층	179,896,674	290,793,326	470,690,000	47,069,000	47,069,000	47,069,000	47,069,000	47,069,000	47,069,000	47,069,000	141,207,000
	12	6층 이상	181,410,177	293,239,823	474,650,000	47,465,000	47,465,000	47,465,000	47,465,000	47,465,000	47,465,000	47,465,000	142,395,000
81.8632	2	2층	184,406,608	298,083,392	482,490,000	48,249,000	48,249,000	48,249,000	48,249,000	48,249,000	48,249,000	48,249,000	144,747,000
	2	3층	186,501,052	301,468,948	487,970,000	48,797,000	48,797,000	48,797,000	48,797,000	48,797,000	48,797,000	48,797,000	146,391,000
	2	4층	188,404,397	304,545,603	492,950,000	49,295,000	49,295,000	49,295,000	49,295,000	49,295,000	49,295,000	49,295,000	147,885,000
	2	5층	190,231,302	307,498,698	497,730,000	49,773,000	49,773,000	49,773,000	49,773,000	49,773,000	49,773,000	49,773,000	149,319,000
	24	6층 이상	191,828,889	310,081,111	501,910,000	50,191,000	50,191,000	50,191,000	50,191,000	50,191,000	50,191,000	50,191,000	150,573,000
84.9744A	2	2층	185,690,793	300,159,207	485,850,000	48,585,000	48,585,000	48,585,000	48,585,000	48,585,000	48,585,000	48,585,000	145,755,000
	2	3층	187,800,524	303,569,476	491,370,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49,137,000	147,411,000
	2	4층	189,715,335	306,664,665	496,380,000	49,638,000	49,638,000	49,638,000	49,638,000	49,638,000	49,638,000	49,638,000	148,914,000
	2	5층	191,557,529	309,642,471	501,20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150,360,000
	24	6층 이상	193,166,581	312,243,419	505,410,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151,623,000
84.9744B	1	2층	186,065,346	300,764,654	486,830,000	48,683,000	48,683,000	48,683,000	48,683,000	48,683,000	48,683,000	48,683,000	146,049,000
	1	3층	188,178,900	304,181,100	492,360,000	49,236,000	49,236,000	49,236,000	49,236,000	49,236,000	49,236,000	49,236,000	147,708,000
	1	4층	190,097,533	307,282,467	497,380,000	49,738,000	49,738,000	49,738,000	49,738,000	49,738,000	49,738,000	49,738,000	149,214,000

	1	5층	191,939,726	310,260,274	502,20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150,660,000
	12	6층 이상	193,552,601	312,867,399	506,420,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50,642,000	151,926,000
84.8460C	1	3층	191,056,849	308,833,151	499,890,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49,989,000	149,967,000
	1	4층	193,006,058	311,983,942	504,990,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50,499,000	151,497,000
	1	5층	194,878,827	315,011,173	509,890,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50,989,000	152,967,000
	12	6층 이상	196,518,456	317,661,544	514,180,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51,418,000	154,254,000
84.9294D	1	2층	188,855,390	305,274,610	494,130,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49,413,000	148,239,000
	1	3층	190,999,520	308,740,480	499,740,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49,974,000	149,922,000
	1	4층	192,948,728	311,891,272	504,840,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50,484,000	151,452,000
	1	5층	194,821,498	314,918,502	509,740,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152,922,000
84.8943E	12	6층 이상	196,457,304	317,562,696	514,020,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51,402,000	154,206,000
	1	2층	185,729,012	300,220,988	485,950,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48,595,000	145,785,000
	1	3층	187,838,744	303,631,256	491,470,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49,147,000	147,441,000
	1	4층	189,757,377	306,732,623	496,490,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49,649,000	148,947,000
	1	5층	191,595,748	309,704,252	501,30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50,130,000	150,390,000
131.9186	12	6층 이상	193,204,801	312,305,199	505,510,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50,551,000	151,653,000
	1	2층	257,234,194	457,385,806	714,620,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71,462,000	214,386,000
	1	3층	260,157,064	462,582,936	722,740,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72,274,000	216,822,000
	1	4층	262,809,965	467,300,035	730,110,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73,011,000	219,033,000
	1	5층	265,354,878	471,825,122	737,180,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73,718,000	221,154,000
	12	6층 이상	267,586,626	475,793,374	743,380,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74,338,000	223,014,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서) 주택형	71.8384	79.0189	81.8632	84.9744A	84.9744B	84.8640C	84.9294D	84.8943E	131.9186
약식표기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체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은 별도 금액입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1		5
	장애인	1		1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1	1	3	2	2	2	2	5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	8	4	8	6	3	3	3	3		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1	1	2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3	2	2	2	1	1	1	1		13
합계		15	9	14	15	9	8	9	9	7	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64 1145 2107 1331"> <thead> <tr> <th data-bbox="264 1145 734 1190">구분</th> <th data-bbox="734 1145 1205 1190">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05 1145 1675 1190">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75 1145 2107 1190">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1190 734 1222">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34 1190 1205 1222">300만원</td> <td data-bbox="1205 1190 1675 1222">250만원</td> <td data-bbox="1675 1190 2107 1222">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64 1222 734 1254">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34 1222 1205 1254">600만원</td> <td data-bbox="1205 1222 1675 1254">400만원</td> <td data-bbox="1675 1222 2107 1254">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64 1254 734 1286">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34 1254 1205 1286">1,000만원</td> <td data-bbox="1205 1254 1675 1286">700만원</td> <td data-bbox="1675 1254 2107 1286">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64 1286 734 1331">모든면적</td> <td data-bbox="734 1286 1205 1331">1,500만원</td> <td data-bbox="1205 1286 1675 1331">1,000만원</td> <td data-bbox="1675 1286 2107 133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접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3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범위) : 6 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60%이한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75%).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13.(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04.14.(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대행은행 창구</li> </ul>
	1순위 (기타지역)	2021.04.15.(목) 08:00~17:30	
	2순위	2021.04.16.(금)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 시 부적격 처리됨)
  - (2)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b>[PC 청약시]</b>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스마트폰 청약시]</b>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b>[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b>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차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직계존·비속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인정받고 자 하는 기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일반 기관추천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 가구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	소득세 납부	본인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참조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04.23.(금) ~ 2021.04.30.(금) 8일간	건본주택 직접방문 제출 동대구역 엘크루 예비뉴원 모델하우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1-1)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 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상기 서류발송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10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100%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기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기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li> </ul>

	<p>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가격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시 : 2021.04.22.(목)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21.05.03.(월) ~ 2021.05.06.(목) 4일간(10:00~17:00)</li> <li>• 장 소 - 동대구역 엘크루 예비뉴원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1-1)</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동,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4. 22.(목) ~ 2021. 05. 01(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4. 2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우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 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재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품질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아파트 분양금액의 계좌는 349401-04-298691(KB국민은행,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입니다.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KB국민은행	349401-04-29869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잔금	KB국민은행	349401-04-29869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101동 203호 홍길동 → 10102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출 제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농협	355-0074-7806-0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잔금	농협	355-0074-7806-0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1동703호 홍길동 →10107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별도)

주택형 (타입)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71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79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81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84A	35,500,000	3,550,000	3,550,000	28,400,000
84B	35,500,000	3,550,000	3,550,000	28,400,000
84C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D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E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131	57,000,000	5,700,000	5,700,000	45,60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별도 계약하는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사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부위 마감 연장이 포함됩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추가선택품목 등을 선택한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 또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세대는 건본주택과 다르게 협소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구조와 마감이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벽, 위치별로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하고,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세대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하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추가 선택 품목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동도가 저하될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계약 선택 시 미선택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 미선택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타입, 가구 설치 및 벽체, 바닥재 마감 등이 발코니 확장형 세대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 미선택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은 책임시행 위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 확장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확장계약 미선택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 미선택 세대 중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함께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후 패키지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홈네트워크(10인치) / 렌지후드 / 3구가스쿠포 / 욕실스피커폰 / 현관카메라 무상 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시공되나 일부벽체 결로발생 및 돌출 및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각종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 패키지 및 기타 선택품목 등) 계약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시공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며, 발코니확장 계약 해지시 총공급대금의 10%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개별시공을 통하여 변경된 마감(인테리어 등) 공정에 대한 하자보수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계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및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옵션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농협	355-0074-7806-0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잔금	농협	355-0074-7806-0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1동 703호 홍길동 → 10107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확장 시 추가선택 옵션품목

1. 패키지 업그레이드 옵션 (패키지 내역 표-A01참조)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옵션품명	확장패키지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71	71 확장패키지	41,290,000	4,129,000	4,129,000	33,032,000	
79	79 확장패키지	43,190,000	4,319,000	4,319,000	34,552,000	
81	81 확장패키지	44,630,000	4,463,000	4,463,000	35,704,000	
84A	84A 확장패키지	45,440,000	4,544,000	4,544,000	36,352,000	
84B	84B 확장패키지	45,440,000	4,544,000	4,544,000	36,352,000	
84C	84C 확장패키지	46,890,000	4,689,000	4,689,000	37,512,000	
84D	84D 확장패키지	46,890,000	4,689,000	4,689,000	37,512,000	
84E	84E 확장패키지	46,890,000	4,689,000	4,689,000	37,512,000	
131	131 확장패키지	77,050,000	7,705,000	7,705,000	61,640,000	

※ 건본주택의 마감 품질은 발코니 확장 및 확장패키지(유상옵션 포함)를 기준으로 시공 되었습니다.<발코니 확장 및 확장패키지,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건본주택 품질과 다름>

※ 확장패키지 미선택시 마감재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마감재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내역 표-A01>

(단위: 원, VAT 별도)

확장 패키지 미적용시		확장 패키지 적용 옵션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현 관	시멘트 마감	현관 폴리싱타일 적용							
	현관 일반 도어록 설치	현관디지털 도어록							
주 방	싱크대 상판 12mm 인조대리석(벽타일 없음)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체)							
	전기오븐 미설치	(빌트인)전기오븐							
	주방 TV 미설치	주방 TV 설치							
	음식물탈수기 미설치	음식물탈수기							
	주방절수시스템 수전패키지 미설치	주방절수시스템 수전패키지							
거 실	주방 수납장 및 레일시스템(중국산)	주방 수납장 및 레일시스템(독일제)							
	거실 아트월 일반 벽지 마감	포세린시스템 아트월(거실)							
욕 실	우물정 천정 미설치	우물정 천정 설치							
	욕실 바닥난방시스템 미적용	욕실 바닥난방시스템(2개소)							
	매직슬라이드 욕실장 미적용	매직슬라이드 욕실장(2개소)							

	수전, 도기 기본형 (계림 L-116 / 다승 IV140)	수전, 도기 업그레이드								
	세라믹 욕조 없음	세라믹 욕조 설치								
	일체형 비데 미적용	일체형 비데 적용								
공 통	하이테크 IOT기술의 스마트시스템 미적용	하이테크 IOT기술의 스마트시스템								
	화장대+드레스룸 시스템선반 미적용	화장대+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적용 (84A/B : 현관 팬트리만 해당)								
	방충망(일반형)	방충망(미세먼지 차감형)								
	바닥재(강화마루)	고급형 강마루								
	원패스 시스템 미적용	원패스 시스템								
	홍리소자 중국산 조명패키지	국산고효율(서울반도체소자)조명패키지								
	전동빨래건조대 미적용	전동빨래건조대								
	룸2 불박이장 미적용	룸2 불박이장 기본 적용								
확장패키지 옵션 합계		41,290,000	43,190,000	44,630,000	45,440,000	45,44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77,050,000

## 2. 선택형 유상옵션

### (1) 현관 중문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선택옵션		옵션가			비 고	
		1안 (기본형)	2안 (유상)	공급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현관중문	전 타입	미설치	3연동 프레임리스 슬라이딩도어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확장시 유상옵션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 (2) 침실 불박이장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선택 옵션		옵션 가			비 고	
		1안 (기본형)	2안 (유상)	공급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침실 불박이장	전 타입	미설치	침실2 or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확장시 유상옵션

2. 플러스알파 옵션 선택품목

(1) 침실 가변벽체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선택 옵션		옵션가				비 고
		1안 (확장시 기본)	2안 (유상)	공급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침실2, 3 가변형 벽체	71/79 84C/84D/84E	침실2, 침실3 구성	침실2, 침실3 -> 침실 2 (넓은방)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확장시 유상옵션
알파룸, 침실2 가변형 벽체	131	알파룸, 침실2 구성	알파룸, 침실2 -> 침실2 (넓은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확장시 유상옵션

(2) 알파룸 옵션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선택 옵션			옵션가				비 고	
		1안 (확장시 기본)	2안 (유상)	3안 (유상)	공급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알 파 룸	84C/84D/84E 131	알파룸 기본(무상) (룸+목문)	알파룸 옵션1 (룸+유리슬라이딩도어)	알파룸 옵션2 (와이드키친+펜트리 구성) /131형 제외	2안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확장시 유상옵션
					3안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별도)

주택형	선택안	실내기	제조사	설치위치	공급가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71	기본형	2대	LG전자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풀세트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79 / 81	기본형	2대		거실, 침실1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풀세트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84A / 84B	기본형	2대	거실, 침실1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플세트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84C / 84D / 84E	기본형	2대	거실, 침실1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플세트	5대	거실, 주방(또는 알파룸), 침실1, 침실2, 침실3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131	기본형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플세트	6대	거실, 주방, 침실1, 2, 3, 알파룸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천정면으로부터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라 1안 및 2안으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미 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과 침실1에는 기본제공(2개소)인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빌트인 가전류

(단위 : 원, VAT별도)

주택형	구분	규격	모델명	공급업체	공급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8.20	입주시	
전타입	인덕션	인덕션 3구	GRA-BI300H	LG전자	1,200,000	110,000	110,000	880,000	전타입
	빌트인 식기세척기	빌트인	DUB22 SB	LG전자	1,200,000	110,000	110,000	880,000	84A/84B/84C/ 84D/84E/131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냉동고	빌트인	RZ32T7665AP	삼성전자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전타입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김치냉장고	빌트인	RQ32T7645AP	삼성전자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빌트인	RR39T7695AP	삼성전자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옵션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81 : 71타입 기준 / 84 A,B,C,D : 84 E타입 기준 )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콤비냉장고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패키지 옵션 선택시)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한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개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시기의 판매가격 인하 및 제품연식변경, 성능 개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선택 시 도시가스 배관 감소비용을 감안한 비용으로 인덕션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은 빌트인타입으로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하부장의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형(발코니확장 및 패키지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시) 재료마감표(기본형 주요 재료마감내역 표-A02참조)

<기본형 주요재료마감내역 표-A02>

주요마감재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현관바닥	시멘트 마감								
싱크대상판(벽타일없음)	12mm 인조대리석								
발코니창	없음								
세면대(계림)+수전(다습)	L-116 / IV140								
양변기(대림)	BC-201								
우물정천정	없음								
방충망	기본형								
바닥재	강화마루								
화장대+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없음								
도어록(방화문형 현관정)	현대디엘-9000								
욕실난방시스템(2개소)	없음								
매직슬라이드 욕실장(2개소)	없음								
마감(천정,바닥) 몰딩	없음								
세라믹 욕조	없음								
하이테크 IOT기술의 스마트시스템	없음								
원패스 시스템	없음								
조명등기구(홍리소자-중국산)	제작품								
전동 빨래건조대	없음								
룸2 또는 룸3 불박이장	없음								

기본형 선택시 유의사항

- 기본형 단위세대의 경우 외부샤시(발코니창호), 현관 바닥타일, 내부샤시(실내창호) 방충망, 전기오븐, 음식물 탈수기, 주방절수시스템 수전패키지, 주방TV, 거실 아트월 포세린시스템, 욕실난방 시스템, 우물정천정, 욕실장, IOT 스마트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천정몰딩, 바닥몰딩, 디지털도어록, 세라믹욕조, 일체형 비데, 홈네트워크(10인치), 욕실스피커폰, 현관카메라, 전동 빨래건조대, 불박이장, 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등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단위세대의 경우 바닥재는 강화마루로 시공됩니다.
- 기본형 단위세대의 경우 싱크대(상판은 12mm 인조대리석)는 일자형으로 시공 됩니다.

- 기본형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다용도실의 바닥은 액상방수로 마감되며, 타일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단위세대의 경우 욕실 세면대(수전포함)는 계림L-116, 양변기(수전부속포함) 대림 BC-201로 시공되며, 샤워기 및 샤워수전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확장형 선택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였으며, 기본형의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동도가 저하될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의 경우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외부도로 및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VII

###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0년 11월 24일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중심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가 단지 내에 함께 설치됩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동파방지열선, 배수펌프, 환기 등 공용설비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이동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 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 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 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중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향후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 및 적정 사유에 따라 구획, 위치, 용도, 면적, 동선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서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물과 상이함에 따른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지하에 문화재 및 지하매설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이 발견 되었을 시 인허가 과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일정, 시공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 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자담보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하자 발생부위 보수 후 마감처리는 사용승인도서(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릅니다.

## ■ 견본주택

- 본 사업의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은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71형, 84E형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 내 안내자료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별도계약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된 배수구, 입상배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위치, 수량,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CG등)은 확장형 기준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확장형 외부 창호(침실, 주방, 드레스룸/다용도실/펜트리(해당시), 거실, 발코니-1)의 실제 시공 높이는 견본주택의 시공 높이보다 높게 시공되며, 이는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른 시공 이므로 견본주택과 실제시공 간의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학교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덕성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 수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등 통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입주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의 경우 유치원생은 2권역내 분산배치, 초등학교는 덕성초에 적정배치, 중학생은 3학교군내 분산배치, 고등학생은 단일학교(광역배정) 및 일반학교(1학교)내 분산배치 가능함.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조망, 일조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앙대로 동대구역고교하부 회전교차로(이안센트럴D아파트 앞) 설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공간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허가조건부 이행에 따라 단지 앞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진·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감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인접 동 및 인접세대, 해당 사업지 인근 고층건물, 주변단지의 신축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층수와 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휴게공간, 부대복리시설, D/A,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판매시설 등의 설치로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견본주택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부속정원,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의 위치변경이나 지정은 불가합니다.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 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종 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및 배수를 위한 장비와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9m로 왕복2차선이며 비상차량 출입구 높이는 5.0m입니다. 지하2층 및 지하3층 출입 높이는 2.8m이며, 지하4층부터는 2.45m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엘리베이터홀)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계량기(전기, 급수, 가스)는 원격식 검침방식입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 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경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마감자재는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는 설계 및 시공성에 따라 타일 또는 석재 등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외부 몰딩마감 및 난간턱 적용으로 발코니 외부 몰딩 및 난간턱 구간(외벽 중 3층, 5층 바닥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되며,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부지 남측에 위치하며 주차장 진출입램프 상부 세대는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소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전기차 충전설비,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 정화조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층의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곳의 상부세대는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및 실외기)은 해당 입주자 공사분으로 실외기 설치구역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후, 설치할 예정으로, 장비설치에 따른 미관저해 및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옥상에 공동시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저층부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사인물, 경관조명, 동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대지 또는 단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촉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포함), 패턴, 마감재, 사인물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세대는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의 상부에 위치한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 건물의 특성상 이삿짐의 이동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며,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하층 및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세대의 경우 PIT층 출입계단의 위치, 형태 및 캐노피 설치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출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자동문, 우편함) 등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심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을 위한 P/S(Pad Switch)판별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공공보행자 통로 및 공개공지는 입주인 외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관리유지비가 발생시,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각동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설치위치 지정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택배보관소는 지상1층 경비실과 함께 설치되며 택배차량은 하역구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지하층 공사 시 주변여건 및 지반여건 변동, 구조/시공개선 등의 사유로 지하층 공법 및 형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급수, 급탕, 오배수관, 도시가스, 덕트, 소방포함)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시설 내용,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은 주방창호의 위치 상 크기 및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펌플랫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단열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열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별 치수에는 천정 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경량벽체로 설치된 실내 벽체는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종량울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종량울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종량울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경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우수출동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다른 기능으로 사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은 창문의 유무,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에 따라 환기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상부 또는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실,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품량 가전제품(전기 인덕션 등)의 추가설치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 다용도실,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부 미관이 저해되거나 설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환기설비 설치 위치 및 소음 발생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신청 세대의 경우 일반세대와 평면이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휠체어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을 차단 구조기준' 에 의거하여 표준바닥구조1~3 중 하나로 시공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바닥 마감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IT상부에 설치되는 세대 및 최상층세대의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개별 발코니 창호 설치시 골조 벽체부분은 단열 미비로 결로가 유발될 수 있으니 해당 부위에 결로방지 단열시공을 권장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2의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시 턱이 높은 구간은 난방시설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대피공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합니다.
- 아파트의 대피공간, 다용도실,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의 크기는 기계 설비 간섭 및 시공 상의 여건으로 크기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 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시 ABS도어 시공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캘러리창은 미관 및 실외기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에 따라 천정 속으로 이동하는 가스배관의 천정 부근 및 빌트인 가스렌지의 가스호스 연결부 부근 등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되며,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단,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시공비도 제외되지 않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가전 및 도기의 모양,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옵션품목)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주방, 키큰장, 도어 및 마감판 등은 국산도어로 설치됩니다.
- 관련법규 및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에 따라 15층 이하 세대에 설치되는 소방관진입창호의 위치, 규격, 사양,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진입창호는 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별 위치가 지정되었으며 추후 소방협회의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진입창호는 긴급 상황시 소방관의 세대 진입을 위한 것으로 창호 전면에 적치물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관진입창호에 시공되는 부착물(소방관진입창호표시, 타격점 등)은 임의로 해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진입창호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침실 등 설치 위치에 따라 창호 및 유리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밸브가 쿡탑설치벽면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장 후면으로 가스배관설치를 위해 벽면과 상부장과 이격 될 수 있습니다.
- 쿡탑설치부위 주방가구 후드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주방가구 수납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단지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구에 의해 실구획 및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 1) 단지 공용 : 관리사무소 (MDF실 및 방재실 포함), 경비실 2개소(택배보관소 포함), 어린이놀이터 1개소(옥외).
  - 2) 아파트 : 경로당,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주민회의실

-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2대, 멀티홈짐 2대, 벤치프레스 2대, 덤벨 2세트, 싸이클 2대 예정되어 있습니다(주민자치기구)
-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중 경로당, 작은도서관은 인근지역 및 거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의 완화를 받은 시설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 및 외부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입주인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사용경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부대시설은 시공예정계획을 표현한 것으로써, 추후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부대시설 상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기능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기본 마감과 기본 집기만 제공되고 기기류 및 일부 집기는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운영을 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주차장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주차장은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의 출입구 및 동선은 중복되어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등) 및 환기장비(폐열회수형 환기유니트 등)는 설치시,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후 입주자공사분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및 실외기)은 해당 입주자공사분으로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미관저해 및 인근 시설(근생 및 세대 등)에 소음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별 급수(20A, 볼밸브 + 계량기 + CAP마감)배관 1개소 및 배수배관(75A) 1개소가 제공되며, 용량 및 관경은 기본 용량으로만 제공됨. 입점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인허가 사항 변경 필요 시 입점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배관의 제공위치는 실제 공사 시 선정되며,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배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점포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개별분기배관 시공 등을 입점자 부담으로 시행해야함. 각 점포별 별도의 급탕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 주방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배관 연결 전 그리스트랩(유분 제거장치)등을 설치하여 공용배수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별 주방배기팬 및 주방덕트설비는 설치되지 않으며, 대규모점포 및 전문음식점 등은 별도의 주방배기용 공사(덕트 및 주방배기팬, 탈취기 등)를 입점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주방배기 공사를 수행하는 점포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아파트 세대로의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인입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업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 및 비용 하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별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스배관 필요 정보는 근생용 가스주배관(50A, 1개소, 차단밸브마감)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개별분기배관, 계량기 설치공사, 가스시설분담금등을 입점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또한, 근생용 가스주배관은 옥외(1F)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점포의 천정 속 공간 및 복도, 공용구간 등에는 인접호실 및 상부층의 각종 배관 및 가스배관, 냉매배관, 덕트 등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전력 계량기, 수도 계량기 설치 및 연동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하여 검침할 수 있으나, 계량기가 미설치되는 가스 등의 사용량은 원격 검침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아파트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용 덕트 및 배관,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공용공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및 덕트 등의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법과 관련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기구함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점포는 옥내소화전 등의 설치위치로 인하여 일부 실내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방법과 관련된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으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점포는 화재 발생 시 관련된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며 특정시설의 입점 시에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 시 스프링클러위치 등이 변경 시에는 소방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인증 및 설계기준

- 범죄예방건축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 ■ 홍보물

- 각종 인쇄물, 평면도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명칭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축벽 또는 옥상조형물에 설치예정인 시공사의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VIII

### 기타 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 개시일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4년 2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1-104-0001000 호	68,227,747,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상복합주택】</b>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단위: 원, VAT 포함)
건축	주식회사 반석이앤씨건축사사무소	1,320,000,000
전기/정보통신	우성설계감리 주식회사	120,000,000
소방	우성설계감리 주식회사	24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관리형토지신탁 안내

본 건축물은 매도인 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공동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및 “(주)삼우아이엠씨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세이지제1차” 등 간에 2020년 12월 10일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써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삼우아이엠씨”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세이지제1차”에게 있습니다.
- ②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분양 또는 매각에 따른 대금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케이비부동산신탁(주)”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삼우아이엠씨”가 부담하고, “매수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자”는 이를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매수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해제 등의 사유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주)세이지제1차”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전도래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세이지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매수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주)세이지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⑤ “매수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용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⑦ “매수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세이지제1차”이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세이지제1차”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⑧ “(주)세이지제1차”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자”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⑨ 소유권이전, 사업정산 또는 신탁종료 후 분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책임은 “(주)세이지제1차”에게 있습니다.
- ⑩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제2항”에 따른 임시관리규약 설명 받고 수령을 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⑪ 위탁자 “(주)세이지제1차” 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인과 합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인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인이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인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인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사업주체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공동시공사	
상 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이지제1차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아이엠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3차 306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17, 수지골드프라자1차 제비 221호(성북동)	경기도 구리시 별말로70번길 70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1-7372818	110111-1940223	140111-0024981

■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59-5번지 일원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1-1번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41)

■ 홈페이지 : <http://ds-elcruapt.com>

■ 분양문의 : 1833-3225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1-1번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41)
- 홈페이지 : <http://ds-elcruapt.com>
- 분양문의 : 1833-3225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 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